

제 호		최초확인일:		년	월	일
확인번호			자동차 종별			
차 명			형식 및 연식			
차대번호			원동기형식			
사용근거지						
소 유 자	성 명 (법인명)		생년월일		(☐ 남, ☐ 여)	
	주 소					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02조제4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					
시 · 도경찰청장			직인			

(뒤쪽)

유 의 사 항

기능교육용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여야 한다.
2.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3.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야 한다.
4. 기능교육용 자동차(기능검정용 자동차를 포함한다)의 종별 기준은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.

기능교육용 자동차
확 인 증

시·도경찰청장

□ 제원			
형식승인번호			
길 이		너 비	
높 이		차 량 충중량	
배기량		정 격 출 격	
승 차 정 원		최 대 적재량	
기통수		연료의 종 류	
비 고			

[illegible]